#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

#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 : 교육의원 박상필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: 2011년 9월 9일
O 회부일자: 2011년 9월 15일

## 3. 제안이유

O 충청북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
○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에 따른 교육 과정 개발 - 운영으로 실용적인 평생교육실시
○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과 지역문화 개받에 노력 하게 하여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함

O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

## 4. 주요내용

가.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및 지원(안 제 2 조)
나. 수요자 관점의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(안 제3조)
다.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학교의 중심 역할 명시(안 제4조제1항)
라.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의무사항 명시(안 제4조제 2 항 부터 제 6 항까지)
마.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(안 제5조)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「평생교육법」제6조(교육과정 둥), 제 16 조(경비보조 및 지원) , 제 17 조(지도 및 지원) 법령과 같은 법 제 29 조 (학교의 평생 교육), 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학교의 평생교육진훙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.

○ 안 제 1 조에 "목적"을 정하고, 안 제2조에 "평생교육기관의 지도 및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"를, 안 제3조에 "교육과정"을 정한 것은 <표 $1>$ 과 같이 학교 내에서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규정이라고 생각됨. <표 1>

2011년 상반기 학교 평생교육 운영 현황

충청북도교육청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실 시 학교수 | 프로그램 개설 강 좌 수 | 참여 연인원 | 소요예산 | 비 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초등학교 | 226 | 313 | 115,196 | 302,558 |  |
| 중 학 교 | 97 | 143 | 24,537 | 66,965 |  |
| 고등학교 | 32 | 55 | 7,080 | 337,285 |  |
| 특수학교 | 4 | 10 | 559 | 1,900 |  |
| 합 계 | 359 | 521 | 147,372 | 708,708 |  |

※자료 : 충청북도교육청 (산업정 보평 생과)
$\bigcirc$ 안 제 4 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실시 를 위하여 교실, 도서관, 체육관,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,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•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은 평생교육 참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O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의 인건비, 저소득층인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, 교재•교구 구 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갖추는 적정한 제정이라 판단됨.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 $\square$ 평생교육법

제6조（교육과정 등）평생교육의 교육과정 • 방법 •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，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．
제 16 조（경비보조 및 지원）（1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 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．

1．평생교육기관의 설치－운영
2．제 24 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．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 발
제 17 조（지도 및 지원）（1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． 제29조（학교의 평생교육）（1）「초•중둥교육법」및「고둥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•시행하도록 하며，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．
（2）각급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．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자치단체 또 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．다만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．
（3）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 실 • 도서관 • 체육관，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．
（4）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 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．

제31조（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）（6）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 2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．

## $\square$ 학교급식법

제 9 조（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）（1）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． （2）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．＜개정 2007．10．17，2010．7．23＞

1．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 조의 규정에따른 수급권자．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．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
2．「도서•벽지 교육진흥법」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
3．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꾜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
4．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